

2024. 3. 14.(목) 제 4 1 5 회 임 시 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임병운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3월 5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3월 6일

3. 제안이유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O 현행 비농업인으로 규정된 참여자 범위를 유휴인력으로 개정하 여 참여자 확대 도모 (안 제2조, 제3조)
- O 인력지원 대상을 생산자단체까지 확대 (안 제7조)
-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신설 (안 제9조의2)
- O 도시농부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농촌지역 고령화 및 노동력 유출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에 의존해 왔으나 도시지역의 유휴인 력을 농작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참여자 사이에서도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그간 20~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 도시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해왔으나 최근 소규모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도시농부 참여 요구가 있었음
- 또한, 농작업 인력 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를 피해 농가에 도시농부를 투입하여 재해 복구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이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 음
- 그 외에 상위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에 비해 축소되어 지원되고 있는 점과 조문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발견되었음
 - O 이에 상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충북형 도시농부를 육성하고 지원 하는데 있으므로, '충북형 도시농부'라 명시하여 조례의 목 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기존 비농업인만을 도시농부로 참여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농업인'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비농업인'으로 명시된 부분을 '유휴인력'으로 함으로써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 안 제3조의 경우 제1항에서는 상술한 제2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제2항에서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에 대한 약칭을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현재 조항이 아닌 제9조제 1항에서 규정한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7조는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을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9조는 상술한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건 비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필요에 따라 인건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
- 안 제9조의2는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7월 수해 피해 농가에 도시농부를 투입하여 재해 복구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도시농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2조는 충북형 도시농부의 효율적 추진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농부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다. 종합의견

- (필요성)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 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상위법과 지원범위를 동일하게 하고 재 난복구에 도시농부의 활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타당성)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고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도시 농부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O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시농부 참여자와 수혜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도시민 일 자리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내・외부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농부 참여자 및 지원농가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요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